

#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9. 2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0. 6.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가족행복지원과장

### 가.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마포구가족센터 운영사무

2) 민간위탁(재계약) 내용

○ 위탁기간 : 5년(2024. 1. 1. ~ 2028. 12. 31)

※ 최초 민간위탁일 : 2015.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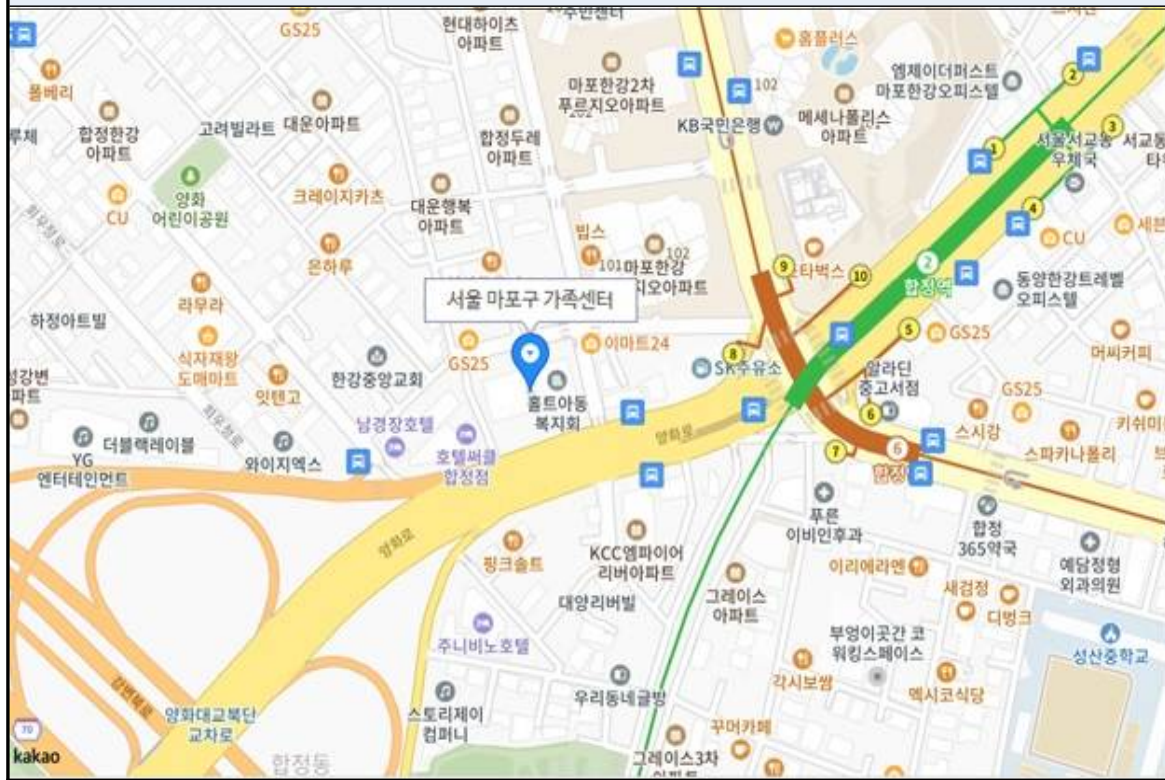
○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마포구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수탁자
마포구 가족센터	양화로 19 지하2층	842.68㎡	26명 (상근)	(사)가정을건강하게하 는시민의모임(이승미)

**위 치 도**



5) 인력현황: 총 168명(센터장 1명, 상근직원 26명, 비상근직원 141명)

○ 상근직원: 26명 (4개팀) (2023.8월 기준, 단위:명)

센터장	운영 지원 팀	가족사업1팀						가족사업2팀			아이돌봄팀	
		팀장	건강 가정	가족 학교	1인 가구	가족 상담	공동 육아	기본사업		특성화	팀장	팀원
								팀장	팀원			
1	2	1	2	1	2	2	1	1	3	4	1	5

○ 비상근직원 : 141명(아이돌보미 129명, 방문지도사 등 12명)

6) 위탁비: 3,399,519천원 (2023년, 인건비 및 사업비)

○ 운영재원: 보조금(국비, 지방비) 및 수탁기관 부담금

○ 예산현황

- 기본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국고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495,955	39,414	187,971	268,570	
센터운영	○운영비	355,175	180	158,845	196,150
	○사업비	140,780	39,234	29,126	72,420

※ 가족상담전문인력 배치, 거점센터, 다이음 사업,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등 센터 사업비 예산 포함

- 별도지원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계	국고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2,903,564	822,691	1,187,277	893,596
가족학교사업	51,407	-	29,278	22,129
1인가구 지원센터	108,600	-	68,600	40,00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68,024	110,391	257,633	-
아이돌봄지원 사업	2,319,140	695,742	811,699	811,699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56,393	16,558	20,067	19,768

#### 7)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위탁신청서 접수: 2023. 9. 6.(수) ~ 9. 13.(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2023. 9. 6.(수) ~ 9. 15.(금)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023. 9. 27.(수)
- 선정수탁계약 체결: 2023. 11월 중

###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마포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따라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마포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 참고 자료

### 1.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